

의안번호	제	호
의 결	2005년 월 일	
연 월 일	(제 회)	

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05년 월 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

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366
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5년 월 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이유

- 소방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을 반영하고, 군지역을 포함한 의용소방대의 설치·운영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부여하는 등 의용소방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임용권을 도지사로 일원화
(안 제2조, 제10조, 제12조)
-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통일(안 제3조)
- 의용소방대 설치 및 임용권의 일원화에 따라 운영주체를 소방서장으로 일원화(안 제7조, 제8조, 제19조, 제21조, 제24조, 제35조)
-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대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보상금 등의 사항을 정비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소요경비 지원규정을 마련
(안 제22조 내지 제29조)
- 재해보상금의 피청구자 및 결정권자를 소방서장으로 일원화하고 서면으로 청구(안 제30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소방기본법」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(이하 "의소대"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①의소대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시, 읍·면별로 관할 소방서장이 설치한다. 다만, 지역실정에 따라 의소대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.

②시, 읍지역에는 여성의용소방대(이하 "여성대"라 한다)를 설치한다. 다만, 면지역에는 필요할 경우 설치할 수 있다.

③의소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산하에 지역의용소방대(이하 "지역대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3조(명칭) ①의소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1. 시지역 : ○○소방서 의용소방대

2. 읍, 면지역 : ○○소방서 ○○의용소방대

②여성대의 명칭은 제1항 중 의용소방대를 여성의용소방대로 한다.

③지역대의 명칭은 제1항 의용소방대 ○○지역대라 한다.

제4조(의소대의 표지) ①의소대의 표지는 대의 기와 관서표지로 한다.

②의소대의 기는 대의 사무실에 두며 도안, 기, 깃발은 별표 1과 같다.

③의소대의 표지와 현판은 별표 2와 같다.

제2장 조직 및 정원

제5조(임용기준) 의소대(여성대, 지역대를 포함한다)는 그 관할구역 내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중 의소대에 자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임용한다. 다만, 제4호 ·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.

1.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
2.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봉공정신이 강한 주민
3. 대원의 정년은 대원 58세, 대장 · 부대장(지역대장 포함)은 60세로 한다. 다만, 읍 · 면지역은 대원 63세, 대장 · 부대장(지역대장 포함)은 65세로 할 수 있다.
4. 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방관련 자격 · 학력 · 경력자
5. 「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 제4조 규정에 의한 자격자

제6조(조직) ①의소대에는 대장 1명, 부대장 1명, 부장, 반장 및 일반 대원과 약간명의 고문을 둔다.

②여성대에는 대장 1명, 부대장 1명, 부장, 반장 및 일반대원과 약간 명의 고문을 둔다.

③지역대에는 대장 1명, 부장, 반장 및 일반대원을 둔다.

제7조(대장 등의 임무) ①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의소대의 업무를 통괄하고 대원을 지휘 · 감독한다.

②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③여성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여성대의 대원을 지휘 · 감독한다.

④지역대장은 대장의 명을 받아 지역대의 대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8조(업무분장) ①의소대 또는 지역대는 총무부, 방호부 및 지도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서무반·보급반을, 방호부에는 소화반·구조·구급반을, 지도부에는 예방반·훈련반·기술지원반을 두며, 부·반별 업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.

②여성대에는 홍보부와 구호부를 두고, 홍보부에는 서무반, 홍보반을, 구호부에는 구급반·구호반을 두며, 부·반별 업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.

③부와 반의 조직 구성 및 정원 조정은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9조(의소대의 정원) ①시, 읍지역의 경우 의소대별 정원은 60명으로 하고 여성대의 정원은 50명으로 하며, 면지역의 의소대(여성대 포함)는 30명으로 한다. 다만, 지역대를 설치하는 경우 정원은 20명으로 한다.

②대원은 관할행정구역(동·리·통)단위로 균형 배치되도록 선발하여야 한다.

제3장 임 용

제10조(대원의 임용) ①대장(여성대장 포함)은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용한다.

②부대장(지역대장 포함)이하 대원은 소속 대의 대장의 의견을 들어 관할 소방서장이 임용한다.

③회계 및 물품출납담당 대원의 임명에 대하여는 「충청북도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1조(대장 등의 임기) 대장(여성대장, 지역대장 포함)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의소대 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차에 한하여 연임할

수 있다. 다만, 부대장, 부장, 반장도 임기제를 적용 할 수 있다.

제12조(고문의 위촉) 고문은 지역사회의 소방안전과 의소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·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방서장이 위촉한다.

제13조(임용구비서류) ①대원의 임용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입대원서 1통
2. 이력서 1통
3. 주민등록등본 1통

②입대원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.

제14조(해임사유)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임용권자는 이를 해임하여야 하며, 임기 만료자 및 정년 도래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.

1. 대원이 소재불명이 된 경우
2. 대원이 구역외로 이주한 경우. 다만,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시지역에서는 대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3.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
4.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5. 정당한 사유 없이 연 4회 이상 교육·훈련에 불참한 경우
6. 기타 대원의 자격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소방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
7. 제17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

제15조(대원의 신분증명) ①임용권자는 대장 또는 대원의 신분을

증명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.

②임용권자는 신분증명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③임용권자는 대원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관계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의용소방대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4장 복무 및 교육훈련

제16조(복무의무) ①대원은 비상근으로 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(교육·훈련 및 홍보활동을 포함한다. 이하 “소방 및 기타재난업무”라 한다) 등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②화재 취약시기 및 경계근무기간에 소방서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소방관서에 출동대기 근무를 할 수 있다.

제17조(금지행위) 대원은 각 의소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1.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
2.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
3. 소송분쟁 기타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
4. 기타 대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

제18조(복제) ①대원의 제복, 모자, 부착물, 부속물, 부착물의 부착 위치 등 세부규격서는 별표 5와 같다.

②단화, 기동화 등은 소방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.

③방수복, 방수모, 방수화 등 안전 장구류는 소방공무원 규정을

준용한다.

④T셔츠, 우의, 운동복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형태는 별표 5-1과 같다.

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복제 등은 임용권자가 조제하여 대원에게 지급한다.

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의 지급방법은 예산을 고려하여 지급 해당자의 희망품목을 지급하는 등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 할 수 있다.

⑦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복제의 지급대상 및 사용기간은 별표 5-2와 같다.

⑧복제의 착용기간은 소방공무원복제규칙을 준용한다.

제19조(복무감독) 대장과 대원의 복무는 소방서장이 감독한다.

제20조(검열) 소방서장은 대의 운영과 업무수행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연 2회(3월과 11월)이상 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21조(교육 및 훈련) ①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월 1회 4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②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실시 상황을 연2회 이상, 소방서장은 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, 대원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

제5장 경비 · 보수 및 보상금

제22조(기본경비) 대원의 수당, 장학금, 대원에 대한 상이·사망 보상금, 대의 장비관리비, 기타 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임용권자가 소속기관에 편성한다.

제23조(출동수당) ①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수당은 1인 1회에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3호봉 봉급 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(단, 백원미만은 절사한다)으로 한다.

③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동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.

제24조(활동보조비 등) ①소방서장은 대원이 의소대와 직접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필요경비(여비 등)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시·군은 관내 의소대가 시·군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활동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도와 시·군은 대원의 사기진작과 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연수, 산업시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5조(재해보상의 종류와 기준) ①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, 부상, 질병에 걸린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.

②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요양보상
2. 장애보상
3. 장제보상
4. 유족보상

제26조(요양보상) ①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진료, 치료, 수술, 약제, 입원비를 지급한다.

② 제1항의 치료비는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년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27조(장애보상) ①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.

② 제1항의 신체장애의 등급 및 신체장애의 등급별 장애보상금은 별표 6과 같으며, 별표 6에 기재된 신체장애가 병발하였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.

제28조(장제보상)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 3월분을 지급한다.

제29조(유족보상)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의 10년분 범위내에서 지급한다.

제30조(재해보상 청구) ① 제25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는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재해를 당한 날부터 6월이내에 대장을 경유, 소방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.

②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자체없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제6장 의용소방대연합회 등

제31조(의용소방대연합회 등) ① 의소대 상호간의 소방업무 정보교환,

대원의 복지향상과 친목도모 등 지역소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와 시·군의 행정구역 단위로 의소대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도연합회 구성은 시·군지역 의소대 연합회 대표로 구성하며, 시·군연합회의 구성은 관할 행정구역내의 각 대장으로 구성한다.

③ 도연합회장은 시·군연합회장 중에서 선출하며, 시·군연합회장은 각 대장 중에서 선출한다.

④ 도 및 시·군연합회장의 정년은 63세로 한다.

⑤ 도 및 시·군연합회장은 연합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
제32조(연합회의 임무)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의소대 친목도모
2. 의소대간의 협력강화
3. 지역행정(소방 및 일반) 협조지원

제33조(연합회 경비지원) ① 도는 도연합회와 시·군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·군은 시·군연합회가 시·군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활동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34조(관할구역내의 업무지원 등) 소방서장은 시와 군에서 관할 행정구역내의 의소대(여성대 포함)에 대하여 활동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제7장 보 칙

제35조(권한위임) 도지사는 의소대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

서장 또는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3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연합회장 정년에 관한 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선출된 도 및 시·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의 임기 만료일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관 계 법령 발췌

□ 소방기본법

제37조(의용소방대 설치 등)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시·읍·면에 의용소방대(義勇消防隊)를 둔다.

②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자로 구성하되, 그 설치·명칭·구역·조직·임면·정원·훈련·검열·복제·복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③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는 그 대원(隊員)의 임면권자가 부담한다.

제38조(의용소방대의 근무 등) 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(非常勤)으로 한다.

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.
③ 의용소방대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.

제39조(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) ①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 관련 교육·훈련을 수행한 때에는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.

②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관련 교육·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.